

2016.10.04

'한-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기관 추가 지정' 안내

기관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한-인도 CEPA에 대하여 발급기관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(EIC), 해산물수출개발청(MPEDA) 외에 **인도섬유협회(Textile Committee)가 추가 지정**되었습니다.

1. 근거 규정

- 한-인도 CEPA 부속서 4-가에 의거,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인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**인도수출검사위원회** 또는 **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**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**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취소, 교체 또는 추가 사실을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**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특혜 적용

- 인도 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**인도섬유협회가 지정된 사실을 우리나라에 통보**함에 따라 **동 협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**하게 되었습니다.
- 인도 측에서 추가 지정된 인도섬유협회가 **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일자('16.3.30) 이후 발급된 C/O**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내에 있는 등 **유효한 C/O일 경우에는 특혜 적용이 가능**합니다.

2016.10.04

'한-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기관 추가 지정' 안내

3. 관련 국내법 개정

- 한-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**FTA 특례법 시행규칙 상의 개정**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추후 관세청 공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